

3-5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①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

2.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3.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나. 지원내용 : 보장구 고장 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 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부품비와 별도)
- 부품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인(보장구 소유자)부담
 - 부품비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연 30만원, 일반가구 연 20만원 한도
 - 단, 부품비는 연초 집중 신청으로 인한 예산의 조기 소진 예방과 다수의 지원을 위해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별 가용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다. 재원부담 : 도비 30%, 시군비 70%

라. 추진체계

구분	기 능
도 (장애인복지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군 (장애인 보장구 담당 부서)	· 수리지원 결정 및 통보 · 보장구 수리 지정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수리비용 지급 및 실적보고 · 장애인보장구 지정업체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점검 실시)
읍면동	·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송부(→시군) ※ 신청·접수 전,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가용 예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수리업체)	· 수리서비스 제공 및 비용청구(→시군)

② 수리시설 신청 및 결정

1. 수리지원 신청

- 신청인 : 본인(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수리지원 결정

-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시군 장애인보장구 담당부서에 즉시 송부하고 시군은 지원기준 적합여부, 가용예산 등을 확인한 후 수리지원 여부 결정
 - 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경과 된 경우에도 수리 지원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 (*별도 수리비 지원제도 있음)
 - 보장구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매업체 등에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장구 구동용 전지(이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의한 보장구 구입비용(이하 “급여”)을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 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 중 타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경우
 - 배터리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사고 등 배터리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제도

- ☞ 배터리구입 후 내구연한(1년6개월) 경과 시 국민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등 구입비용 지원(기준가액은 160천원이며, 급여종류에 따라 지원률 (80~100%)적용)

- 단, 위의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의 대상에게는 지원할 수 없음
 - 전동보조기기를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타지원**이 불가한 경우
- *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 : 인지기능 어려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혈관성 치매 등, 정신질환자(단, 우울증은 지급 가능)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준용**
- ** 타지원 : 국민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등

3. 수리 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 발급 등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정업체에『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결정통보 및 수리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 이하 의뢰서)를 교부함하여 수리지원 결정사항 통보
- 의뢰서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직접 교부하고 지정업체에는 팩스 등으로 교부

③ 수리지원 서비스 제공

1. 수리 지원의 시기

- 지정업체는 의뢰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지정업체는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체의 지위를 가지며, 지정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지정업체에 귀속됨
- 다만, 기타 부품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업체가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함이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는 3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품수급 등 24시간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한 사항은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

2. 고장의 진단 및 수리 비용의 고지

- 지정업체는 소속 책임기술자(이하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보장구의 상태와 지원대상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내용과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고장의 진단 및 고지 내역은 『장애인보장구 고장 진단 및 본인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함
 - 수리요원은 지원대상자가 수리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서비스의 제공

- 지정업체 및 수리요원은 서비스 제공 시 부품의 부분적인 교체 또는 수선으로도 고장 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품의 부분적인 교체 또는 수선을 통해 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장구 부품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으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당해 부품과 동등한 등급과 기능을 갖춘 부품으로 교체 가능
- 다만, 지원 대상자가 임의로 부착한 부속품은 교체하지 아니함

4. 재위탁

- 지정업체는 지원 대상자에게 수리요원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 또는 제3자의 소속 직원(이하 “제3자 등”)에 재위탁할 수 없음
- 다만, 보장구의 핵심 부품 등의 고장 또는 훼손으로 통상적인 수리가 곤란한 경우, 해당 보장구의 제조업자 등에게 수리토록 하게 할 수 있음
 - 제3자에게 위탁하게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정업체는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업체의 사무소 등 수리가 가능한 곳으로 보장구를 운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보장구 운반에 따른 추가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하며, 보장구의 적재, 운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지정업체가 배상하거나 지정업체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함

5. 본인부담금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품 교체 비용이 지원대상자의 연간 부품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하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지정업체 및 수리요원은 지원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이외의 추가 비용을 징수 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④ 비용의 청구·지급 등

- 해당 월의 서비스 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5일까지 다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에 청구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비용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
 - 장애인보장구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 시장군수는 지정업체가 제출한 수리 비용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업체에 수리비용 등을 지급
 - 시장군수는 청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⑤ 지정업체

1. 지정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보장구 수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보장구 관련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한 보장구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를 지정하여 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보장구 보유 대수, 관련 업체분포,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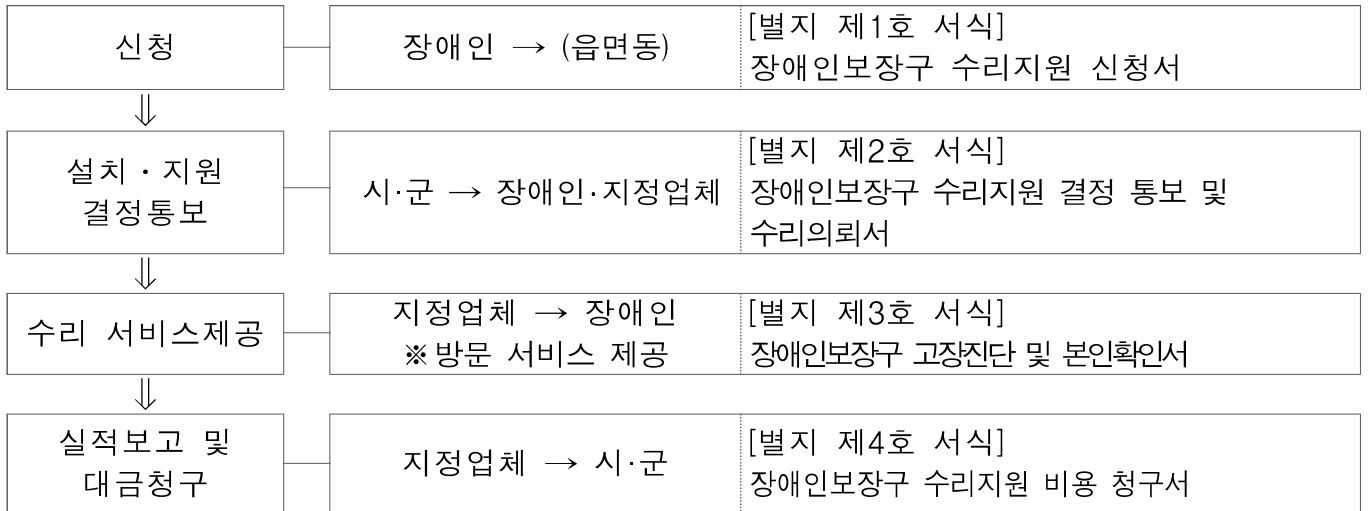
2. 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지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대상절차,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해야함
 - 지정 협약서 표준안(별지 제8호 서식)을 참고하여 시장군수와 지정업체 간 협약체결

3. 지도점검

- 지정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하고 지정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함

6 신청 및 지급절차



7 행정사항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수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반상회보 게재, 장애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 및 개별 안내문 발송 등)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이 누락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체결 익월 10일까지 협약체결 내역 (지정업체 현황 포함)을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지원실적을 보고하되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추진실적(별지 7호)에 의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서비스 품질 제고와 지정업체의 부당행위 감독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별지 6호)를 실시할 수 있음.

8 기 타

- 시장군수는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지원 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정업체 및 대상자에게 지원 절차, 내용 및 비용의 부담 등 제반사항을 안내 하여 부정행위 및 서비스 이용자와 지정업체 간 분쟁을 예방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일시적인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정업체에 사업비 일부를 선(先)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음
- 지정업체는 선(先) 지급 받은 사업비로 예비부품, 장비를 구입하거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리요원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소			연락처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소득			
보장구	유형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제조업체				
	명칭/규격				
	구입일시	년 월 ※모르는 경우 미기재	배터리 구입일시	년 월 ※모르는 경우 미기재	
수리가 필요한 부품 또는 부위					
위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을 신청하며, 보장구 수리비용이 부품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 신분증 < 대리 신청 범위 > ○ 「민법」상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

식별번호	사·군명 - 일련번호(3자리)		(단위 : 원)		
지원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주소	연락처			
결정내역	구분	연간 지원 한도액 (A)	기 지원액 (B)	지원가능액(잔액) (C) = (A) - (B)	
	부품비				
	그 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보장구	유형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제조업체	명칭/ 규격			
	신청인의 자가진단 (수리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항목	세부내용		
		① 전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전원은 들어오나 이동 불가 /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원이 꺼짐		
		② 소음	심한 소음 / 작은 소음		
		③ 진동	심한 진동 / 작은 떨림 증상		
		④ 속도	조절 안됨 / 너무 빠름 / 너무 느림		
		⑤ 브레이크	제동 안됨 / 제동 불량(밀림 현상)		
		⑥ 조향장치	방향 조절안됨 / 한쪽으로 치우침		
		⑦ 컨트롤러 / 조이스틱	파손 / 작동되지 않음 / 작동이 불량함		
		⑧ 계기판	미작동 / 일부 미작동 / 이상 표시		
		⑨ 주바퀴	(통타이어) 파손 / 심한 마모		
		⑩ 보조바퀴	(튜브형) 파손 / 튜브 펑크 / 심한 마모 / 공기압 불량		
		⑪ 배터리	☐ 본인 필요에 의해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 중 타지원 미해당 ☐ 내구연한(1년6개월) 미경과로써 부득이한 경우		
			파손 / 충전 불가 / 소모가 빠름 / 충전속도 극히 느림 (용량 : DC__V, __Ah)		
		⑫ 전조등	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		
⑬ 방향지시등		완전 파손 / 전구만 미점등 (좌, 우, 양쪽)			
⑭ 시트	훼손 (부위 :)				
⑮ 팔걸이	훼손 (좌, 우, 양쪽)				
⑯ 기타(내용 :)					
상기와 같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직 인) 지정업체 및 신청인 귀하					

장애인보장구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

식별 번호	※수리의뢰서와 동일하게 기재함			(단위 : 원)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장 구	유형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제조사		품명/규격		
진 단 내 용	고장 부위(부품)			고장 정도	교체 시 소요비용
	종류 또는 부품명	규격	수량		
	계				
				수리 가능 / 교체 필요	
				수리 가능 / 교체 필요	
				수리 가능 / 교체 필요	
				수리 가능 / 교체 필요	
본인 부담금 산출					
구분	총 소요액 (A)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A) - (B)	
부품비					
출장비 및 기술료				없음	
상기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고장을 진단하고 소요비용을 안내합니다. 20 . . . 진단자 : 업체명 책임기술자 성명 (서명)					
위 진단내용에 동의하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겠으므로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수리완료 확인	상기 고장내용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일자 20 . . . 확인자 : 지원대상자 성명 (서명)				

장애정보장구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단위 : 원)

① 수리 일자	② 식별 번호	③ 성 명	④ 소득 수준	⑤ 보장구 종류	⑥ 품명 / 규격	⑦ 수리내용	수리지원 비용 소요액					⑬ 청구액 =⑨+⑪	비고
							⑧ 계 =⑨+⑩	⑨ 출장비 · 기술료	부 품 비				
									⑩ 소 계	⑪ 지원액	⑫ 본인부담		

※ 작성요령

- ① 수리일자 : 실제로 수리한 날짜
- ② 식별번호 : 수리의뢰서, 고장진단 및 본인확인서의 식별번호와 일치하도록 작성
- ④ 소득수준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소득
- ⑤ 보장구 종류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로 구분 수리내용 : 수리의 세부내용을 기재함
예시) 바퀴2개 교체, 배터리 교환, 킥박스 교체, 조이스틱 수리 등
- ⑪ 지 원 액 : 부품비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연간 부품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됨)
- ⑬ 청 구 액 : ⑨출장비·기술료와 ⑪지원액(부품비)은 시·군에 청구함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서

☐ 충청남도 ____시(군)에서 추진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장애인보장구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 해당란에 (○) 표시로 체크하시거나 약술하시면 됩니다.

1. 귀하의 장애유형·등급, 성별 및 소득수준은 어떠신가요?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성 별	소득수준
		☐ 남 ☐ 여	☐ 저소득 ☐ 일반소득

2. 귀하께서는 어떤 수리지원 서비스를 받으셨나요?

보장구 종류	수리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전동스쿠터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3. 수리 지원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불 만)	그렇지 않다 (변화 없음)	보통 이다 (약간 만족)	그렇다 (만 족)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

4. 위 문3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체크 가능)

서비스 대기 기간이 길다	수리기사가 불친절함	서비스 품질이 낮음(불만)	출장비 등 추가비용 요구	지원액이 적음

5. 행정기관(시·군)에서는 수리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귀하께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불만)	그렇지 않다 (약간 불만)	보통이다 (약간 만족)	그렇다 (만 족)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

6. 위 문5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식 7>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분기)

☐ 예산집행 현황

○ 총괄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 현황			잔 액 (E)=(A)-(D)
		기 집행액 (B)	今분기 집행액 (C)	집행액 누계 (D) = (B) + (C)	
계					
도 비					
시군비					

○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 원 유 형			비 고 (본인부담금)
		계 (A) = (B)+ (C)	출장비·기술료 (B)	부품비 지원액 (C)	
합 계					
전동스쿠터	소계				
	저 소 득				
	일반소득				
전동휠체어	소계				
	저 소 득				
	일반소득				
수동휠체어	소계				
	저 소 득				
	일반소득				

□ 보장구 수리지원 세부현황

(단위 : 명)

구 분		수리 유형별							비고
		소 계	배터리 교 체	바퀴	컨트롤러 조이스틱	모 터	시 트 팔걸이	기 타 경정비	
합 계									
전동 스쿠터	소계								
	저소득								
	일반가구								
전동 휠체어	소계								
	저소득								
	일반가구								
수동 휠체어	소계								
	저소득								
	일반가구								

□ 수리지원 서비스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만 족 도					비 고
		매우불만	약간 불만	약간 만족	만 족	매우 만족	
합 계							
전동스쿠터	소계						
	저소득						
	일반소득						
전동휠체어	소계						
	저소득						
	일반소득						
수동휠체어	소계						
	저소득						
	일반소득						

○ 주요 불만 사유

(단위 : 명)

구 분		불 만 유 형 별					비 고
		서비스 대기기간	수리기사 불친절	수리 서비스 품질 낮음	출장비 등 추가요구	지원액이 적 음	
합 계							
전동스쿠터	소계						
	저소득						
	일반소득						
전동휠체어	소계						
	저소득						
	일반소득						
수동휠체어	소계						
	저소득						
	일반소득						

○ 정보제공 등 장애인 편의 측면

(단위 : 명)

만족도					비고
불만	변화 없음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 주요 불만사유 -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정업체 지정 협약서 표준[안]

_____시(군)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_____시장(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_____시(군)에서 추진하는 『2026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장구 수리업체의 지정, 보장구 수리 서비스의 대상과 절차 및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가리킨다.

② 보장구라 함은 「의료기기법」제2조, 제3조 및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별표1에 의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을 가리킨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갑” 또는 “갑” 소속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 중 관련 서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수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이 적합하다고 “갑”이 결정한 장애인을 가리킨다.

④ 지정업체라 함은 지원대상자가 보장구 수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이 지정한 업체(“을”과 같다)를 가리킨다.

⑤ 서비스라 함은 지정업체가 지원대상자의 보장구가 본래의 기능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적용범위 등) 본 협약서의 제 규정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에 따른 협약 기간은 “갑”과 “을”이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하되, 협약 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제5조(협약의 내용) ① “갑”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을”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업무의 재위탁 등) ① “을”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다만, 수리의 대상이 되는 보장구의 고장 또는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통상적인 수리가 곤란한 경우 “을”은 해당 보장구의 제조업자 등 제3자에게 수리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장구의 단순한 운반의 경우에도 제3자의 차량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 항에 따라 “을”이 제3자에게 수리토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장구의 고장 또는 파손 정도와 통상적인 수리가 곤란한 사유를 “갑”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본 협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을 요하는 때로부터 최소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동 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본 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협약기간 중이라도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의료기기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정지·수리업 신고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함에 따라 “갑”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갑”과 “을”이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갑”과 “을”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해지가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협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제공) ① “을”은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뢰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가 서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제반 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회피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하 부득이한 경우), 이를 “갑” 및 지원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갑”은 “을”이 보고한 사유를 검토하여 3근무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제3항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 둘 수 있다.
- ⑤ “을”은 제4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로 사전 협의 된 범위 내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함이 곤란함을 알려야 하되, “갑”의 승인은 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품질 제고) ① “을”은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서비스 제공 시, 부품의 부분적인 교체 또는 수선으로 고장 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경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품의 부분적인 교체 또는 수선을 통해 수리비용을 절감하여 지원 대상자의 부품비 본인부담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주말·연휴 등 수 일에 걸쳐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게 되는 때에는 응급상황을 대비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의무사항) ① “을”은 「의료기기법」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부품을 교체할 때에는 수리의 대상이 되는 보장구 제조사에서 출고 시에 장착한 부품으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품과 동등한 등급과 기능을 갖춘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임의로 부착한 부속품은 교체하지 아니한다.
- ③ “을”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갑”이 정한 부품비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지원 대상자에게 일체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을”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정치적인 목적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서류 및 대장의 비치) “을”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보장구 수리의뢰서 보관대장
2. 출장기록부
3. 보장구 고장진단 기록 대장
4. 보장구 부품 구입 및 수불대장
5. 보장구 수리비용 산출내역 대장

6.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장부·대장 등 서류
7. 그밖에 작성·비치함이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장부 및 대장

제13조(수리 비용의 지급 등) ① “을”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장구 수리비용을 산출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출한 청구 내역을 검토하여 “을”이 수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

② “갑”은 수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을”에게 관련 장부 등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을”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전 항에 따른 비용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수리비용 청구 내역을 검토한 결과, 허위·과다 산출 및 청구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요된 수리비용 중 부품비를 제외한 비용(이하 출장비·기술료라 한다)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건당 출장비·기술료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갑”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을”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을”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수리비용을 지급한 이후라도 수리비용 허위·과다 청구로 부당하게 수리비가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부당 지급된 수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소정의 기일을 정하여 “을”이 지원대상자에게 그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2026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전 항에 의하여 “갑”과 “을”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6조(비밀유지 및 정보 등의 보호 등) ① “을”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업무 내용·정보 등 비밀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 항에 따른 사항은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적용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을”이 본 협약에 따라 보장구를 수리하거나 보장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와 제16조에 따른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전 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을”이 “갑” 또는 제3자에게 손실·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해당 손실·손해를 배·보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 사유로 “갑”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 “을”이 대위 변제 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서의 작성 보관) 본 협약을 명확히 하고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 상호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충청남도 시(군) 로(길)

협약자 : 시장(군수)

(을) 주 소 : 충청남도 시(군) 로(길)

협약자 : (인)